

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2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9년 12월 20일 제출
- 회 부 : 1999년 12월 20일

3. 제안이유

-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 (행자부 훈령 제9호) 이 폐지되고,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제정, 공무원 교육훈련의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시상대상자 (안 제2조)
 -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시한 교육훈련평가결과 성적우수자
 - 각 과정별 교육운영 유공자, 분임토의평가 최우수 및 우수분임조
- 기금의 설치·집행 및 재원 (안 제4·5조)
 - 설치 :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교육원에 기금 설치
 - 집행 :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 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
 - 재원 : 대통령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
- 기금의 운용관리 (안 제6조) : 기금의 운용관리는 교육원장이 관리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

- 행자부 훈령이 폐지되고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